

■ 최신 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868호, 2013. 6. 4., 제정, 시행 2013. 12. 5]

1. 개정이유

전체 인구의 91퍼센트와 각종 산업기반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및 정비(안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및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운영(안 제7조 및 제8조)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심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와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설치(안 제10조 및 제11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도시재생사업시행의 지원, 전문가 육성·파견 등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와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및 정비(안 제12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안 제19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의 평가(안 제2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사.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 등의 보조 또는 용자(안 제2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운영(안 제28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구축(안 제2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차. 건축규제에 대한 예외 규정(안 제32조)

도시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및 높이 제한 등의 건축규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카.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안 제3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